

대학원 외국인 입학에 관한 세칙
<극동규정 제112호> <시행일 2017.04.01>

제 정 : 2013.05.21.
개 정 : 2017.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극동대학교 대학원학칙 제14조에 의거 대학원 외국인유학생 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의 적용은 외국인유학생에 한하며 ‘외국인유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3조(모집학과) 모집학과는 대학원학칙 제6조 별표1의 각 학위과정 전 학과로 한다.

제4조(지원자격)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외국인유학생의 입학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학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5조(모집시기) 외국인 유학생의 모집(원서접수)은 매 학기 개강 60일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적인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제출서류) 외국인유학생의 입학전형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입국 전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2.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 공증 (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3.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공증 (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2부)
4. 자기소개서(A4 2장 이내) 1부.
(한국어로 자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어 작성 불가시 모국어로 작성 후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
5. 수학계획서(A4 2장 이내) 1부.
(한국어로 자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어 작성 불가시 모국어로 작성 후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
6. 자필이력서 1부. - 친필기재 (인적사항, 부모관계, 부모직업, 지원자의 현재 직업, 학교 등 기재)
※ 한국어 이외의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서류를 별도 제출하며 상기 ①항의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 필요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입국 후 제출서류

1. 입국여권 사본 1부.
2. 국내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생활관 입사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전염성 질환 및 유전성 질환 등으로 생활관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생활관 입사를 취소할 수 있다.)
3. 졸업예정자 중 합격자는 개강일전까지 졸업증명서 1부.
4.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입국 후 90일 전까지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등록 필)

제7조(전형방법 및 선발) ① 서류심사는 해당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수학능력의 적정여부를 판정한다. 단, 해당학과(전공)주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타 학과(전공)주임교수가 수학능력의 적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대학원위원회에서는 심사에 대한 결과를 심의하며 총장이 최종 선발한다.

제8조(입학허가) ① 입학전형에 선발된 자 중 한국어 능력이 없는 학생은 본교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연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외국어로 수업이 가능한 학과(전공)는 주임교수가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한국어연수 과정은 1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권리와 의무) ① 외국인학생은 학칙과 제 규정에 따라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외국인학생이 학칙과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교시킨다.

제10조(입학등록) 합격통지서를 받은 외국인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한국어교육원의 한국어 연수과정이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은 여학연수비도 납입한다.

제11조(입학취소) 이 규정 제6조에 의거 제출한 서류의 허위 기재나 위변조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입학은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장학금)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국제협력단의 별도 장학규정에 따른다.

제13조(준용)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칙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규정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대학원외국인입학에관한규정」을 「대학원외국인입학에관한세칙」로 한다.